

청소년활동안전공제(수련시설) 안내 자료

□ 개요

○ 사업목적

-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

<사업시행근거>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(공제중앙회의 사업) 제1항제6호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

○ 가입대상
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서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- 영어체험센터, 외국어 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

○ 피공제자

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
 - ※ 만 19세 기준일: 공제중앙회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(수련시설)에 가입한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

○ 보장기간

- 1.1 ~ 12.31.(1년)
 - ※ 연도 중 가입한 경우 가입승낙일로부터 12.31.까지

○ 공제료

- 청소년: 1인당 110원
- 단순이용자: 1인당 40원

○ 가입 방법

가입 방법	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(https://ssifins.schoolsafe.or.kr:4443/sws/)에 청약 신청
가입인원 산출 예시	10인이 2박3일동안 활동하는 경우 · 산출식: 10인 × 3일 = 30인
납부금액 계산 방법	(청소년 수 × 110원) + (수련시설 단순 이용자 수 × 40원) ※ 1) 학생 수 :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청소년활동 계획 연인원 2) 단순시설이용자 : 특별약관 가입 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수련시설 단순이용자 수

○ 보상범위

- 청소년수련시설장의 관리·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
-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등 청소년수련시설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

가.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
 나. 일사병
 다.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
 라.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
 마.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-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○ 보상한도

구 분		보 상 한 도
인적 손해	청소년	1사고당 10억원(요양, 간병, 장애, 유족급여, 장의비 등) 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
	단순이용자	사망·장애 1억5천만원, 상해 3천만원 ※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
물적 손해		1사고당 200만원
제3자 배상		대인손해 · 1사고당 10억원 · 사망·장애 1억5천만원, 상해 3천만원
		대물손해 1사고당 200만원

※ 대물(물적) 손해의 경우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에 한함

○ 사고처리 및 보상 절차



① 사고통지	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>에 입력 * 공제중앙회 홈페이지(ssif.or.kr) → [중앙회 공제사업] → 중앙회 업무처리시스템 (사고통지-공제급여) 클릭
② 사고통지 접수	사고통지 접수·보완·반려
③ 공제급여 청구	청구서류 파일을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>에 첨부하여 청구
④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	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※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
⑤ 공제급여 지급	·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·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(공문 발송)
⑤-1 이의신청	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 우편발송
⑤-2 심의결정 및 통보	·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·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재결서 통보(등기우편)